

행 정 자 치 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횡성군, 정선군

내 용

강원도 횡성군 및 정선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제2항에서는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50% 경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제3항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해당 과세관청에서는 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하였을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의 추징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즉시 그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러나, 강원도 횡성군 및 정선군에서는 영농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중인 2016.9.20.일 현재까지 취득세 2건 / 14,556,020원을 추징하지 않고 영농법인에 대한 지방세감면 사후관리 및 취득세 추징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영농법인의 취득세 추징내역 (단위 : 원)

지자체	법인명	법인번호	과세물건	취득일	감면조항	추징세액	추징사유
합계	2건					14,556,020	
횡성군	(주)○○○	000000-00000000	○○면 ○○리 00 외 0필지	'14.5.14	지특법 11조2항	13,956,020	직접 미사용
정선군	○○	000000-00000000	○○면 ○○리 000 외 0필지	'14.6.2	지특법 11조1항	600,000	직접 미사용

※ 자료 : 감사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횡성군수, 정선군수는

영농기업이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추징하지 않은 취득세 2건 / 14,556,020원을 부과·징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